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결	서무	간사	위원장
재			

등록금심의위원회 8차 회의		일시	2017.11.21.(화) 09:00
		장소	본부관 311호
참석위원	정승렬(위원장), 김태호, 이호선, 김인준, 이태준, 김민주 (이상 6명)		
업무지원	간사 : 조 준 / 서무 :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 배수현 차장(예산평가팀)		
불참위원	전수빈 위원 (이상 1명)		
의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 회의내용

1. 개회선언

■ 위원장

-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오늘 회의는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안건으로 함.
- 미리 배포한 2017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함.

2.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학교 측 대표위원

- 2017학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 지출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지 및 교사매입 관련 적립금 인출은 계약금 용도인지, 계절학기 수업료는 매년 12억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

■ 간 사

- 계약금 용도로 책정된 금액이며, 계절학기 수업료는 교무팀에서 책정한 예상 수입을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계절학기 신청학생 수는 큰 변동 없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평생교육원 수입이 본예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상당액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016학년도 결산에 대비해서는 수입이 증가하였음. 올해 예산 책정 시 평생교육원에서 정한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전년대비 수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타 대학과의 경쟁 심화, 교내 공간의 부족 등으로 평생교육원 수입 규모 확대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평생교육원 수입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함.
- 수입 내역에서 국제교류팀의 기타수강료수입은 어떠한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교내 한국어교육센터의 정규과정 외의 수강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며, 규모가 크지는 않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타 대학에도 이와 같은 수입이 있는지, 타 대학 대비 수입 규모가 어떠한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공개된 타 대학의 자료는 없으나, 우리 대학의 한국어교육센터의 규모는 타 대학 대비 큰 편으로 볼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 전입금 규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 규모는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법인 전입금은 연금 및 건강보험 등에 소요되는 법정부담금으로 교직원 수의 증가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며, 예상 인원보다 교직원 수가 감소하여 본예산 금액 대비 줄어들었음. 전년 대비 전입금 규모는 증가하였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 전입금은 반드시 연금 및 건강보험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전입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
- 법인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우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며, 학교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우리 대학의 법인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법정부담금 이상의 금액을 전입할 수 있겠으나 현재 법인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며, 법정부담금액을 모두 전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간 학교 측의 답변을 보면 법인의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떠한 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재벌 그룹 대학 법인이라 하더라도 전입금이 많은 것은 아니며, 우리 대학의 법인은 서울 지역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위에 해당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은 수익 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학교 측 대표위원

- 학교 법인은 수익용 자산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그 금액을 학교로 전입하는 것임.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교에 전입금을 전입하는 것이 중요함.
- 수익 증대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만약 잘못되면 법인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법인의 위기가 곧 학교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교육부에서는 법인의 수익용 자산을 통해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위기로 수익이 감소할 경우 학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본예산에서는 일반기부금이 없었다가 추경예산(안)에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기타기부금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함.

■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

- 본예산에서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이 발생하여 계정만 일반기부금으로 옮긴 것임.
- 기타기부금은 그 내용을 별도로 분류할 수 없는 소액의 기부금들을 모아놓은 내용상의 분류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사우디정부장학생 기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세계 100대 대학에만 해외 국비장학생을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 사우디정부장학생 기부금은 학생들의 수업료, 튜터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대학의 수입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경력개발센터의 현장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인 Corep 과정을 사우디정부에 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대학에서도 사우디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일반기부금 수입은 건축기금적립에 대응하는 것인지, 학교발전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질의함.

■ 간사

-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개인 1명이 낸 금액은 아니

고 동문회 등 여러 곳에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국가장학금의 감소 원인은 내부요인인지 외부요인 때문인지 질의하고 CK-II 사업 및 LINC 사업의 지원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국가장학금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부요인임.
-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지원금이 증가하며, 올해 우리 대학의 2개 CK-II 사업단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그밖에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국가 연계 취업중점대학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학생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육부 지원금 내역 중 ‘국가근로장학금 등’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국가근로장학금 등’이라고 표기한 것은 기타기부금 사례와 같이 소액이면서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용도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명시한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평생교육원 운영비 보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최초로 신설된 것인지 질의하고, 교내외 임대시설의 종류에 대해 질의함.

■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

- 처음 신설되어 지원받은 것이며, 교내 임대 시설로는 매점, 주차장 등이 있으며 교외 임대 시설에는 교외 기숙사 내 편의시설 등을 꼽을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내에 있는 영빈관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숙박 제공 사업을 하는 곳인지 질의하고, 체육대학 교양수업에 대한 기타교육부대수입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외부인에게 숙박시설로 임대하는 수익 사업을 하지는 않으며, 우리 대학과 관련하

여 방문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임.

■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

- 체육대학 교양수업은 여름이나 겨울 시즌에 가능한 수상스키, 스키 등의 수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징수한 만큼 모두 지출하고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수업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 교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음에도 국고자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아니라 일부 신청학생만 참가하는 교양수업이므로 실비를 징수하고 있음.
- CK-II, LINC 사업의 실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예상액이 감소한 만큼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사 및 교지 매입 변경에 따른 기금 인출 금액과 건설가계정의 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인출 금액이 적은데,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는 지 질의함.
- 장기차입금의 비교란에 교지 매입 등 지연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차입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차입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함.

■ 간 사

- 차액은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예산으로는 차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내년 예산은 본예산(안) 책정 시 별도 논의할 사안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교원 보수와 관련하여 전체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함.
-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등 전체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의 질 확보에 앞서 양적인 측면에서 교육권 확보가 필요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정년과 비정년의 구분은 계약의 문제이고 연구에 대한 책임의 차이일 뿐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고 오히려 교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

당하는 사항이므로 요청하는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려움.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있어서 정년트랙 교수와 차이가 없음.
- 전임, 비전임 교원 수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회의까지 전달하겠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비정년트랙 교수의 강의 질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수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임.

■ 학교 측 대표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적정한 등록금 산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님.
-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등록금의 적정 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수준, 물가상승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에 국한하여 살펴봐야함.
- 전체 교수의 보수 규모가 나와 있고 학생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정년, 비정년 트랙 교수 수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직원보수에서 신규임용보다 퇴직이 많음에도 총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

- 임용과 퇴직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신규임용은 연초에 진행되고 퇴직은 연말에 하게 되면 총액이 증가할 수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본예산에서는 북악관과 본부관 시설 개선을 합하여 건축물관리비 계정에 5억이 책정되었으나 추경예산(안)에서는 북악관 시설 개선 9억만 있음. 공사가 변경된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본부관 공사는 취소하고 학생 관련 시설인 북악관 환경 개선에 모두 투입하였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이러한 시설 개선 계획의 경우 설계도 등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

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큼.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은 좋지만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건축물관리비 중 전기통신설비관리비 내역의 금액이 본예산 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증감 수치가 다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리스임차료와 관련 어떤 차종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총 4대이며, 차종은 제네시스와 그린저이고 차량 운영비가 저렴하고 목돈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매입보다 리스가 더 유리함.

■ 학생 측 대표위원

- 일반용역비 중 위탁소송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소송이며 소송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도서관 옆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한 소송임.
- 최근 이슈가 된 소송 비용의 교비 유용 사례는 소송의 이익이 개인에 귀속되기 때문이었으며, 본 사안은 학교 부지와 관련한 것이므로 소송의 이익은 학교에 귀속되는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소송주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소송 주체는 관련 부서에 정확히 확인하여 별도로 알려주겠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 시 모두 공개하고 검토하는 등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회의비 계정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기타운영비 계정에 회의 관련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사학회계기준에 따라 회의비는 회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T/F 등 회의체에서는 회의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회의



이외에 필요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기타운영비 계정에 예산을 책정한 것임.

■ 학생 측 대표위원

- 청춘공감 장학금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 교외장학금에서 학생지원팀 장학금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서 충당한 것은 아닌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학생지원팀 교외장학금은 외부에서 기탁하는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교외장학금 재원으로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 청춘공감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계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기타 외부장학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임대보증금은 매년 본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예산에서 감소하는데 본예산에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는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기타외부장학금은 국민 후원의 집 등 외부에서 기부한 재원으로 구성된 장학금임.
- 교내 입점한 매장의 임대보증금이므로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므로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학생 측 대표위원

-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액은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함.

■ 학교 측 대표위원

- 학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국인 학생 등록금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여 반영된 것임.

### 3. 폐회선언

- 2017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차기 회의는 2017.11.29.(수)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 끝.

2017. 11. 21.

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승렬



위원

김인준

위원

이호

위원

이태준

위원

전수

위원

김민주

위원

김태호

